

세법학 II-2 조세특례제한법

조세특례 적용시한(연장·종료)

이 자료는 2025.1.1.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작성된 『조세특례의 적용시한(연장·종료)』에 관한 목록입니다. 이 자료의 목적은 「2025년 세법학 II-2 (조세특례제한법)」 책이 출간되기 전에 「2024년 세법학 II-2」 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미리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.

이 자료에 정리된 개별 조세특례 적용시한(연장·종료)에 관한 사항을 책에 표시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.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(健勝)을 기원합니다.

2025. 1. 4.

세무사 정정운

P	행	조세특례(교재 목차)	
		종전 적용시한	개정 적용시한(연장·종료)
		(2) 감면대상기업의 범위	
20	下 9행	2024년 12월 31일 이전에	2027년 12월 31일 이전에(연장)
22	下 7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23	上 17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		(3) 세액감면의 내용	
24	下 13행	2024년 12월 31일 이전에	2027년 12월 31일 이전에(연장)
		(4)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	
26	上 6행	2024년 12월 31일 이전에	(종료)
	上 7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(종료)
	上 8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(종료)
		(5)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	
26	下 1행	2024년 12월 31일 이전에	2027년 12월 31 이전에(연장)
		1.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	
39	上 4행	2024.12.31.까지	2027.12.31.까지(연장)
		3.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
47	下 15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(종료)
		4.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
49	上 7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
65	下 2행	6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	
		2024년 12월 31일 이전에	2027년 12월 31일 이전에(연장)
67	下 6행	7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	
		2024년 12월 31일 이전에	2027년 12월 31일 이전에(연장)
79	下 7행	(1)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	下 1행	(2)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96	上 3행	7.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	
		2024.12.31.까지 취득하는 경우	(종료)
99	下 10행	(1) 근로소득세 부과와 세액감면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101	下 2행	3.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(고용증대세제)	
		2024년 12월 31일이	(종료)
111	下 9행	7.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
		2024년 12월 31일이	(종료)
278	上 17행	5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5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283	下 15행	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	
		2024.12.31.까지	(종료)
284	上 1행	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284	上 7행	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4.12.31.까지	(종료)
289	下 13행	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5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290	下 3행	3.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292	下 7행	6.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297	下 6행	V.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	
		2023.12.31. 이전에	2024.12.31. 이전에(연장)
	下 4행	2026.12.31.까지의	
	下 2행	2026.12.31.까지의	
298	下 4행	2027.12.31.까지의	
		2028.12.31.까지(연장)	
		(2) 과세표준계산특례	

327	下 14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9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		3. 세액감면	
331	下 1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	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	
333	下 16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(연장)
379	下 16행	㉔ ~ 2024.12.31.	(종료)